

NDA, CDA,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공동개발계약 Collaboration Agreement

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 이론상 YES 실무상 NO



1. 현실적 문제 - NDA, CDA, Distribution Agreement, Collaboration Agreement 등 각종 계약의 비밀유지조항 Confidentiality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빈발함, 특히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 후 기존에 받은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많음

2. 원칙적으로 계약위반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3. 비밀정보제공자(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 약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5.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비밀유지약정 위반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빈발함.

6. 최근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의 국내 판매를 위한 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지속 후 계약종료, 그 후 국내회사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밀정보, 기술영업자료를 사용한 행위 적발함, NDA, confidentiality 조항 위반사실은 인정됨 BUT 법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부정

7.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

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가 제2차 대리점계약에 의한 비밀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 B사가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 B사의 거래처인 피고 C사의 영업자료를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와 내용은 동일하고 일부 색상과 글자체만을 달리한 피고 C사의 도표 및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 C사의 도표 및 그래프가 2018. 초경 피고 C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및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B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및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의 수치는 피고들 상품을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아니고 그 표시형식도 피고들 상품의 표시형식과 상이하여,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가 피고들 상품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B사가 위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 및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8. 실무적 대안 - 비밀유지약정 위약 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는 항 주장하는 방안

9.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됨.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법리 적용되므로 손

해발생 자체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10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을 넘어서 독립된 책임으로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추가하여 징벌 penalty라는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가 비밀유지조항 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 부담.

11. 법원은 위약벌을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약벌 법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치밀한 계약조항의 작성이 필요함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